

예금거래 기본약관

1. 개정시행일 : 2019.08.26.

2.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제 1 조 ~ 제 3 조 (생 략)</p> <p>제 4 조 거래방법</p> <p>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(증서· 전자통장을 포함한다) 또는 수표·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입금할 때와, 자동이체약정·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.</p> <p>제 5 조 ~ 제 9 조 (생 략)</p> <p>제10조 지급·해지청구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거래처가 자동이체·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</p> <p>제 11 조 ~ 제 24 조 (생 략)</p>	<p>제 1 조 ~ 제 3 조 (좌 동)</p> <p>제 4 조 거래방법</p> <p>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(증서· 전자통장을 포함한다) 또는 수표·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입금할 때와, 자동이체약정·전산통신기기, <u>바이오인증</u>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.</p> <p>제 5 조 ~ 제 9 조 (좌 동)</p> <p>제10조 지급·해지청구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거래처가 자동이체·전산통신기기·<u>바이오인증</u>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</p> <p>제 11 조 ~ 제 24 조 (좌 동)</p>	<p>- 바이오인증 방법 추가</p> <p>- 바이오인증 방법 추가</p>